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집행부 제출】

검토보고서



2020. 4. .

기획 행정 위원회
전문 위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0. 4. 23.
기획 행정위원회

1. 검토과정

- 안건명: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 제출일자: 2020. 4. 9.
- 제출자: 달서구청장(세무과장)
- 회부일자: 2020. 4. 9.
- 검토기간: 2020. 4. 9. ~ 4. 16.(5일간)

2. 제안이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위기를 상생 극복하고자 임대료 인하한 건물주 및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 및 「대구시 지방세 감면 계획」에 따라 구세를 감면하기 위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구세 감면 대상
 -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
 -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감염병 전담 병원, 선별 진료소 운영 병원 등)

○ 구세 감면 세목 및 감면율

-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임차인이 사행성·유흥업종 제외)
 - 재산세(건축물): 임대료 인하액의 10% 감면, 100만원 한도
-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
 - 재산세(건축물+토지): 지원 의료기관 직접 사용 부동산(의료용)에 한해 25% 감면
 - 주민세(종업원분): 지원병원 '20. 3월 ~ 8월 신고분(6개월) 면제※ 사업주가 지급하는 월 급여총액(1.5억원 초과시)×0.5%
 - 주민세(재산분): 지원병원 '20년도 7월 신고분 면제※ 과세기준일(7.1) 현재 330m² 초과 사업소 연면적×250원

○ 구세 감면액은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전(예정)

4. 참고사항(관련법령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 행정안전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방세 지원계획
- 대구시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지방세 감면 계획

5. 검토의견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파생된 경제적 위기를 상생 극복하고자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건물주' 및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 계획」 및 대구시 「지방세 감면계획」에 따라 구세를 감면하기

위해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 소요예산은 '의료기관' 감면이 7개소 9억6천2백만원 정도(종업원분 주민세 723, 재산분 주민세 52, 재산세 187)이며,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에 대한 감면은 '20. 3월 ~ 8월까지 접수한 결과에 따라 감면액이 결정됨. 본 구세 감면¹⁾에 따른 재원은 대구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보전할 계획에 있어 구 재정에 부담은 없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상황에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구세 감면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1) 구세 감면 추계액

가. 지원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총 962백만원(예상액)

(단위: 백만원)

연번	의료기관	구분	소재지	감면 세목 및 금액				비고
				소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재산분)	재산세	
	합계			962	723	52	187	
1	보훈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월곡로 60	187	141	10	36	
2	계명대 동산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달구벌대로 1035	557	425	30	102	
3	구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감삼북길 141	71	41	3	27	
4	보광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구마로 128	39	26	2	11	
5	세강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구마로 220	32	19	2	11	
6	삼일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월배로 446	26	24	2		건축물 임대
7	더블유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달구벌대로 1632	50	47	3		건축물 임대

나. 착한임대료 감면: 신청내용에 따라 추후 확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 · 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 · 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 · 적용 대상자 · 세목 ·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

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 ⑧. (생략)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의 적용 대상자로서 법 제2장 감면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감면 세목(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을 추가하려는 경우

②. ~ ④. (생략)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 ⑨. (생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방세 지원 계획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542('20. 2. 5.–

□ 추진 배경

- 금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피해양상,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극적 지방세 지원 필요

▪ 메르스 당시('15년) 지방세 지원: 총 14.6억원(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 등 감면 3.4억원, 납기연장 6억원, 징수유예 5.2억원 등)

□ 지원 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통업소 제외)

□ 지원 내용

- **(기한연장)** 6개월(최대1년) 범위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취득세(수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주민세 종업원분

-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 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지방세징수법 §25, §105)

▪ (고지유예·분할고지) (예) 취득세 무신고분 부과고지 시 가능
▪ (체납액 징수유예) (예) '19.12월분 자동차세, '20.1월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등
▪ (체납처분 유예) (예) 체납중인 모든 세목에 대해 가능

- **(세무조사 유예)** 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지방세기본법 §83)

- **(지방세 감면)** 자치단체 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 인정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 §4)

※ 예: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등

□ 지방자치단체 조치사항

- 확진자, 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 대상 적극 지원 및 주민홍보 실시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지방세 감면 계획

- 대구시 세정담당관 3660 ('20. 3. 23.) -

□ 추진 배경

-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직면
-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 지원
- 착한 임대료 확산에 동참하는 건물주의 재산세 감면 방안 의견 수렴(3.4.)
 - 구·군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시청에서 권고 기준(안) 통보

□ 지원 대상

- 코로나19에 의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및 의료기관기업*

□ 지원 내용

①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 (균등분 주민세^{시군세}) 2020년도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주민세 면제

②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 29억원(예상)

- (재산세^{구군세})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재산세 25% 감면

③ 착한임대료 동참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 영세한 소상공인 등을 위하여 2020년도 상반기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
-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에 대하여 2020년 건축물 재산세(임대료 인하액의 10%)를 감면한다. 이 경우 재산세 감면액은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의료기관 편중에 따른 구·군 부담 불균형 완화와 착한 임대료 확산을 위한 구군 부담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전